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박 근 혜 인

2013년 7월 16일

국 무 총 리 정 홍 원

국 무 위 원
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유 진 룡

◉법률 제11903호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

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(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)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, 이러한 수화를 복제·배포·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.

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)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,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·배포·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6조제2항 중 “제32조 또는 제33조”를 “제32조·제33조 또는 제33조의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수는 26만명에 달하고 있으나, 현행 「저작권법」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만 명시되어 있고 청각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없는바, 청각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공표된 저작물 등을 수화 또는 자막으로 변환할 수 있고, 이러한 수화 또는 자막을 복제·배포·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